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43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정희용 · 이인선 · 최수진
고동진 · 서천호 · 김선교
조승환 · 이만희 · 정점식
김용태 · 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평온하게 영업을 영위하던 해당 사업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 등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돼지 사육농가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돼지 사육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중인 사업

자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해당 축산업자는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항제2호, 제7조의2 신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사업자”를 “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발적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축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u>사업자</u>	2. ----- ----- -----사업자.
<u><단서 신설></u>	<u>다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7조의2(자발적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축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u>

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
산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